

# 「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지광천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, '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.
-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, 시험,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나.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,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10조)
- 다. 시험위원 선정,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- 라. 신규임용시험 특전, 경력경쟁임용시험,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14조~제19조)
- 마.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,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20조~제22조)

- 바.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,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3조~제25조)
- 사. 평정관련 자격증, 근무경력 등 가산점 관한 사항 (안 제26조~제26조의3)
- 아. 겸임, 전보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(안 제27조~제29조)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규칙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관련입니다.

‘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,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, 시험,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안 제정취지가 있습니다.

#### ○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,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
-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험위원 선정,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
-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 특전, 경력경쟁임용시험,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
-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,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, 승진  
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 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3까지는 평정관련 자격증, 근무경력 등 가산점  
관한 사항

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겸임, 전보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 
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검토결과,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# **4. 참고자료: 관계법령**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  
용 등에 관한 규정」